##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34 발의연월일: 2022. 6. 9.

발 의 자:김상훈ㆍ이명수ㆍ임병헌

태영호 • 배준영 • 김태호

홍문표 • 박대출 • 이태규

조수진 · 김예지 · 엄태영

이종성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,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, 나아가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 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 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,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 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.

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(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

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	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
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	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
별법 부칙	별법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	<u>&lt;</u> 삭 제>
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.	